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80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김소희 · 이종배 · 김기현
이헌승 · 최수진 · 김상훈
신성범 · 김대식 · 유용원
김선교 · 권영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결정기준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하여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업종별 · 규모별 ·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소득분배율 등을”을 “소득분배율 등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종류별료”를 “종류별,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류별 구분은”을 “종류별,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 구분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에 선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주휴수당)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u>소득분배율</u>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u>종류별로</u>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 ----- ----- <u>소득분배율</u> 등과 사용자의 지불 능력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u>종합적으로</u> ----- ----. ----- <u>종류별,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u>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u>종류별 구분</u> 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후단 신설>	② ----- <u>종류별,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 구분</u> 은----- ----- ----- -. <u>이 경우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에 선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u>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생략)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	④ ----- -----

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단서 신설> 2. 3. (생략) ⑤ ~ ⑨ (생략)	----- ---. ----- ----- -----. 1. ----- ----- ----- ----- ----- ----- -----.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주휴수당)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	--